

보도시점 2025. 8. 3.(일) 12:00 / 배포 2025. 8. 1.(금) 08:30
< 8. 4.(월) 조간 >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운임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
- 이행강제금(121억 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

※ 주말 엠바고 주의 : 8월 3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주)(이하 ‘아시아나항공’)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서,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5년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24년 말~'34년 말)으로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630)
		담당자	사무관	강혜진 (044-200-4626)

1

조사 배경

1.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어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 중국('22.12월), 영국('23.3월), 일본('24.1월), EU('24.2월), 미국('24.11월)

-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조건으로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부과하였다.

* 대한항공,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 계열)

- (구조적 조치)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개방한다.

*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 (행태적 조치) 구조적 조치 이행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구조적 조치 대상 노선 현황

지역	노선	구분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이상 인천발)	왕복 기준
유럽	런던,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이스탄불, 바르셀로나(이상 인천발)	
중국·일본	장자제, 시안, 선전(이상 인천발), 베이징, 칭다오, 나고야(이상 부산발)	
기타	자카르타, 시드니, 프놈펜, 팔라우, 푸켓, 괌(이상 인천발), 다낭, 세부, 괌(이상 부산발)	
국내	제주-김포, 김포-제주, 제주-청주, 청주-제주, 제주-광주, 광주-제주, 제주-부산, 부산-제주	편도 기준

2. 시정조치 불이행 인지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된 시정조치 사항들에 대한 '25년 1분기 이행점검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평균운임 관련 행태적 조치 위반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2

법 위반 내용

- 아시아나항공은 '25년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위반 현황

위반 노선	좌석등급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비율(%)
인천-바르셀로나(BCN)	비즈니스	28.2
인천-프랑크푸르트(FRA)	비즈니스	12.5
인천-로마(FCO)	비즈니스	8.4
	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이다.

-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 즉,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인상 한도는 '19년 좌석 등급별 분기별 평균운임 × (직전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 ÷ '19년 같은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하며, '25년 1분기의 경우 '19년 1분기 평균운임 × ('24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 '19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됨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아시아나항공의 행위는 기업결합 승인시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6조(이행강제금) 제1항 및 제125조(벌칙)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부과대상이 된다.

*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의 실효성 및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의 내용 및 이행노력,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됨

-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의의 · 기대효과

-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사건 이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모두 2건으로, '03년 (주)코오롱에 1억 6천만 원, '17년 (주)현대HCN경북방송에 13억 2천만 원이 부과됨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24년 말~'34년 말)으로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1

아시아나항공 일반현황

(기준: 2024년 말, 단위: 백만 원)

구분	내 용	
회사명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대표자	송보영	
사업내용	항공운송업	
주소	서울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자산총액	아시아나항공	13,449,903
	기업집단 전체 (2024년말 기준)	58,173,637
매출액	아시아나항공	8,318,567
	기업집단 전체 (2024년말 기준)	30,548,856
주주구성	주주	비율(%)
	(주)대한항공	63.88
	금호건설(주)	11.12
	금호석유화학(주)	3.98
	1% 미만 소액주주	21.02
	합 계	100.00